#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0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김문수・주철현・양문석

송재봉 • 권향엽 • 조계원

정을호 · 김준혁 · 민형배

이성윤 • 박균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비중은 5.4%에 불과한 실정임.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"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"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. 도서·벽지 수, 65세 이상 노인 인구,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,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결과 서울시의 경우 39.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.7점으로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.

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. 특히 전라남도 내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(37.3%)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, 2012년 4,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3월

기준 3,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.

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, 지원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. 따라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·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,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·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(안 제1조)

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ㆍ시행(안 제4조)

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#### 다.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(안 제5조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 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 학으로 지정하여야 함.
- 2)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야 함.

## 라.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(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)

-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
  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
   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함.
- 2)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.
- 3)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동안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.

법률 제 호

##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공보건의료"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.
- 2. "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- 3. "공공보건의료인력"이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

말한다.
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고등교육법」을 준용한다.
- 제4조(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보건의 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.
  - 1.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
  - 3.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

학으로 지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·도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- 3.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기준, 지정 요건, 학생정 원,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운영)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,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장은 공공보 건의료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학비등의 지원)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

-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그 밖에 실습비·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학비등"이라 한다)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. 다만,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비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 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 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,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의사면허의 부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 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 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

-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의사면허를 부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업무에 종사하여야하며,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의무복무 기간의 산정)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9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  - ② 「병역법」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무장교로 복무한 기간은 제9조제1항 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.
- 제11조(의무복무 기관 등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의무복무 기관 및 전문의 교육수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제공,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 용할 수 있으며,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- 제13조(교육협력기관)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협력기관으로한다.
  - 1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 앙의료원
  - 2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  - 3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  - 4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
- 제14조(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부속병원) ① 의과대학이 없는 국립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우 해당 국 립대학에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부속병원을 설립한다.

- 제15조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 부장관, 국방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계획의 수립,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의 학생선발,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실습·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지도·감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 대학을 지도·감독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 과대학이 아닌 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, 학생의 모집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 중 "3년 이내"를 "10년 이내"로 한다.